

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의거 조성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변경
 - 당초: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 - 변경: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·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
- 주민지원기금 설치 조문 추가(안 제1조 및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의 제명에 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’을 명시하고, 제1조와 제9조에 관련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